

## 계약제교원 해고무효확인청구

|       |   |      |          |
|-------|---|------|----------|
| 소송종류  | 행정소송  | 법원명  | 인천지방법원   |
| 사건번호  | 2022구합○○○○○[1심]   | 사건유형 | 인사처분     |
| 원고    | □□□   | 피고   | 인천광역시교육감 |
| 판결선고일 | [1심]2022. 11. 24. 원고일부승   | 비고   |          |
| 사건개요  | <p>○ 원고는 △△△△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(2021. 3. 1.~ 2022. 2. 28.)하고 2021. 3. 1.부터 △△△△중학교에서 근무한 계약제 교원이었음. 원고가 2021. 5. 21. 수업시간 중 ○○○(이하 '피해학생')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안에 대해 △△△△중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는 2021. 7. 20.경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 후, 피해학생에게는 '전문가 심리상담 조언'을, 원고에 대하여는 '특별교육 15시간 이수,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, 학교장 인사조치'를 의결하였음. △△△△중학교장은 2021. 7. 22.경 원고에게 경고 조치를 하였고,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와 체결된 임용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함.</p> <p>○ 원고는 이 사건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임용계약 해지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무효이며, 임용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함.</p> |      |          |
| 주 문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</li> <li>2. 피고는 원고에게 2021. 7. 27.부터 2022. 2. 28.까지 월 3,952,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/li> <li>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</li> <li>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</li> <li>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</li> </ol>  |      |          |
| 판결요약  | <p>○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1. 3. 1.부터 2022. 2. 28.까지이며,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연장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고무효확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.</p> <p>○ 원고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학생의 지위에 있는 일반인 누구라도 불쾌감과 굴욕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성희롱에는 해당하고, 나아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 등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. 그러나, 원고가 피해학생의 잘못된 수업자세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희화적으로 표현하려다 실수로 발생한 점,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</p>  |      |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| <p>반성하는 태도, 피해학생이 원고와의 교사-학생 간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대면사과로 마무리하길 원했던 점 등, 이 사건 행위의 경위와 비위 태양의 정도, 비난 가능성, 그 후 정황, 학교장의 경고로 자체 종결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징계기준에 따른 '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'로 '감봉-견책'에 해당함. 「유.초.중등.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」에 따르면 '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'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가 가능하나, 원고를 교사의 지위에서 배제하지 않고서는 교사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거나 원고의 행위가 비위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. 이 사건 해고통보는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권 행사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함.</p> <p>○ 이 사건 해고통보는 적법한 해지사유 없이 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, 2021. 7. 27.부터 2022. 2. 28.까지 월 3,952,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. 이 사건 해고통보의 효력 유무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이 2022. 2. 28. 종료되는 이상 2022. 3. 1.부터의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없음.</p> |
| <p><b>결 론</b></p> | <p>○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/p>  |